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미역건조기 설치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내 용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북구는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10개소 5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공동체에 대해 [표1]과 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공동체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550,000	275,000	220,000	55,000
2015	○○자율공동체	150,000	75,000	60,000	15,000
	○○자율공동체	100,000	50,000	40,000	10,000
	○○자율공동체	100,000	50,000	40,000	10,000
	○○자율공동체	100,000	50,000	40,000	10,000
2017	○○자율공동체	100,000	50,000	40,000	10,000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sup>1)</sup>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구입하거나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01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재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 시 보조금 집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는 [표2]와 같이 2015년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추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00,000원을 사업비에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공제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비를 확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내역

<단위 : 원>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별표 6> 어업용기자재

- 양어장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와이어로프, 어업용발전기, 수산물건조기 등 29종류

연도	공동체명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사업비 내역				미환수액 (국비분)
			계 (세액)	국비 (세액)	지방비 (세액)	자담 (세액)	
2015	○○	미역건조기(2대)	3,300,000 (300,000)	1,650,000 (150,000)	1,320,000 (120,000)	330,000 (30,000)	150,000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은

[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환수 및 반납조치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